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2493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2. 10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7.

주 문

-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○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○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정은영

별지